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국회, 조달청, 지자체, LH 등으로부터 공정한 설계공모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요구 등에 따라 공모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점 일부 조정(안 제5조 및 제12조)

나. 설계공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실시간 공개, 심사총량제, 위원장 호선 등

다. 설계공모 정의 및 계약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2조 및 제41조)

라. 그 외 자구수정

\* 입상작의 보상 및 취소 기준 정비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 중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위촉한**”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1.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를 위촉·활용하는 발주기관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발주기관

제12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에게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2조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중 “공개”를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당선작 선정”을 “입상작 선정”으로, “당선작을”을 “입상작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로 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계약상대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모공고를 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p> <p>2. ~ 14. (생략)</p> <p>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p> <p>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써,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 ----- ----- ----- ----- ----- ----- ----- ----.</p> <p>2. ~ 14.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p> <p>① ----- ----- ----- ----- --.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p>

가. ~ 하. (생략)

② (생략)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 ⑤  
(생략)

⑥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생략)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천자 중에서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신설>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 하.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⑧ ~ ⑪ (생략)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 ③ (생략)

④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 ③ (생략)

④ 발주기관등은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② (생략)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

공모안 제출마감일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 ⑬ (현행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입상작 선정 -----  
-----  
-----  
----- 입상작을 -----  
----- . 이 경우 발주기관등은 보상한 공모비용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④ (생략)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 ⑤ (생략)

-----  
-----  
-----  
-----  
----- 수  
있으며, 동 순위 발생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비율을 조정할 수 ----.

가. ~ 라.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① -----  
-----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② ~ ⑤ (현행과 같음)